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7
----------	-----

2014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4년 11월 5일
- 다. 상정결과 : 제25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창학)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구분이 단순(‘체육경기’, ‘공공·문화예술·기타행사’)하여 시민이용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체육행사’ 구분을 신설하고, 2014년 12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예정인 장충체육관 내 U-스포츠 실, 헬스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행사' 구분을 신설하고, 사용료를 '체육경기'의 1.5배 수준으로 책정함(안 제5조 및 별표 3).
- 장충체육관 신규시설 추가 및 사용료 책정(안 별표 1 ~ 3)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사항 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 (6) 갈등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발생 가능성 없음.
- 기타
 - (1) 입법예고(2014.8.28. ~ 9.17.)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첨
 - (4) 규제심사 결과 : 별첨
 -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별첨
 -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별첨
 - (7) 공공갈등진단 결과 :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가. 개정안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체육시설 전용사용료가 ‘체육경기’와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등 2가지로 단순하게 구분되어 있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체육행사’ 구분을 신설하고,

올해 12월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내년 1월 개장행사와 더불어 운영예정인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과 다목적실 등 신규 설치시설의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음.

나. 전용사용 구분 세분화에 대한 검토

- 현행 조례의 체육시설 전용사용 구분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체육경기,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 등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사용료는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일반행사가 동일하여 체육경기와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2가지로 구분되는데

체육경기와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의 사용료는 체육시설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야구장, 축구장 등 실외시설은 2.4배에서 2.9배, 실내체육관 등은 3.3배에서 3.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 3개 체육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서울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만 체육경기로 구분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사용료가 부과되고,

일반 동호회가 주최하는 체육행사는 체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사 사용료가 적용되어 체육경기에 비해 2.4배 ~ 3.5배 비싼 사용료가 부과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될 뿐 아니라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 왔음.

-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상업적 목적을 제외한 동호회 및 개인 주최 체육목적 행사를 전용사용 구분에 신설하고 사용료를 현행 체육경기의 1.5배 수준으로 새로 규정할 경우,

동호회 및 개인 주최 체육목적 행사의 사용료를 현재 일반행사 사용료의 43% ~ 62% 수준으로 할인받는 효과가 있어 민원해소 및 체육시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일반행사를 모두 체육행사로 감면 적용할 경우 연간 2억원 내외의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비용추계를 하고 있으나,

체육행사 구분을 신설하더라도 기존의 일반행사가 모두 체육행사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저렴한 사용료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 증가까지 감안한다면 세외수입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장충체육관 신규 설치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검토

- 1963년 국내 최초 돔 실내경기장으로 개관한 장충체육관은 준공한 지 50년이 경과하여 2010년 8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66억 7천7백만원 포함, 총 사업비 326억 1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5월 리모델링 착공하고 2014년 12월 준공, 2015년 1월 개관을 앞두고 있음.
- 동 조례안은 리모델링 공사로 장충체육관 내에 신설된 지하 2층 보조체육관(567㎡, 연습경기 시설), 지하 1층 다목적실(260㎡, 주민 생활체육 지원시설)과 체력단련장(221㎡)의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데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의 전용사용료와 개인연습사용료는 기존 시립체육시설의 보조체육관과 동일한 120,000원 ~ 156,000원(체육경기 기준)과 4,000원 ~ 8,000원으로 각각 책정되었으며, 체력단련장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또한 잠실과 창동의 체력단련장과 동일한 44,000원 ~ 66,000원으로 책정되었음.

- 다만, 주민 생활체육 지원시설인 다목적실의 경우, 기존의 시립체육시설 중에는 유사 시설이 없어서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에 그 기능을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 운영”으로 규정하고,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는 인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와 남산타운 문화체육센터의 수강료와 장충체육관 내 다목적실에서 운영 예정인 프로그램을 감안하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000원(상한액)”으로 하고,

[별표 3] 전용사용료는 다목적실(260 m^2) 면적이 보조체육관(567 m^2)의 46%임을 감안해 보조체육관 전용사용료의 46%인 18,500원 ~ 24,000원(체육경기 기준)으로 하고, 체육행사는 1.5배,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는 3.3배 수준으로 책정했음.

- 그 중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보면, 기존 올림픽 주경기장 및 체조관의 생활체육교실 수강료가 1일 1시간, 주 6회 기준 월 36,700원 ~ 55,000원이며, 승마, 수영, 빙상 등 특별한 종목을 제외하면 월 수강료가 10만원을 넘는 경우가 없고

장충체육관 인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보더라도 3만원대 ~ 5만원대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일부 종목 소수특강 프로그램만 10만원이므로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신규시설이라고 해서 비싼 수강료를 책정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상한액 10만원과는 별개로 다양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용료 또한 보다 저렴하게 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타 지자체 체육관 전용사용료 비교>

구 분	개관 (년도)	건립비	연면적 (㎡)	좌석수 (석)	체육경기 (원)	체육 외 행사(원)	연고 구단
장충체육관	1963	9,200만	8,385	4,658	120,000~ 156,000	420,000~ 546,000	프로배구(우 리카피탈, GS칼텍스)
	2014	326억	11,429	4,513	상동 검토	상동 검토	-
잠실실내체 육관	1979	54억	26,096	11,069	120,000~ 156,000	420,000~ 546,000	프로농구 (삼성)
부산 사직체육관	1985	-	31,041	14,099	100,000~ 200,000	500,000	프로농구 (KT)
성남 실내체육관	1989	-	13,889	5,711	60,000	300,000	프로배구 (도로공사)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	2006	740억	43,029	7,220	130,000	300,000	프로농구 (전자랜드)
고양 체육관	2011	991억 수영장포함	16,406	6,946	80,000	450,000	프로농구(오 리온스)
아산 이순신 체육관	2012	305억	13,300	3,176	25,000	50,000	프로배구 (우리카드)
원주 종합체육관	2013	500억	23,000	4,594	100,000	150,000	프로농구 (동부)
인천 계양체육관	2013	2,030억 양궁장포함	18,719	4,283	130,000	300,000	프로배구(대 한항공 흥국)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비교〉

- 장충체육관 반경 1km 이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로는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3개(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헬스),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의 체육센터가 있으며 수강료는 프로그램 종류 및 강습 횟수별로 21,000~100,000원까지 다양함.

충무아트센터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나이트댄스(주2회) 26,000원 ·댄스스포츠(주2회) 38,000원	·밸리댄스(주2회) 35,000
·탁구(주3회) 53,000	·오후 단전호흡(주3회) 40,000원
·댄스스포츠(주5회) 56,000	·직장인 에어로빅(주5회) 45,000원



- 또한 장충체육관이 위치한 중구를 포함한 인근 5개 자치구의 수강료를 비교해보면, 동대문구와 성동구는 저렴(5,700~54,000원), 중구와 종로구는 보통(25,000~100,000), 용산구는 높은(20,000~150,000원)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 야간 주차장 이용이나 이용요금 할인 등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답변 :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며, 향후 장충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5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각각 하고,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를 “제1호부터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체육행사 : 제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행사. 단, 상업적 목적(광고, 방송 등) 행사는 제외한다.

별표 1 중 장충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장충체육관	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서울시 중구 동호로 8 (장충동2가 200-102)
	보조체육관	농구, 배구, 각종경기 및 행사	
	체력단련장	체력단련	
	다목적실	생활체육, 문화예술교실운영	

별표 2 중 1. 개인연습사용료의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연습사용료

시 설		금액
체육관 및 보조체육관	잠실실내체육관, 잠실보조체육관,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창동실내체육관	4,000~8,000

별표 2 중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장충체육관

시설	수강료
다목적실	100,000(상한액)
체력단련장	44,000~66,000
비고	1. 각 프로그램은 1개월을 기준으로하고, 1일 수강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2. 다목적실의 수강료는 월 상한액임.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당,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 육 경 기	체 육 행사	공공 문화예술 일반행사	기타 사용	
잠실 종합 운동 장	실내체육관	120,000~156,000	180,000~234,000	420,000~546,000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제1·2 수영장	09 : 00-18 : 00	780,000~1,014,000	1,170,000~1,521,000	1,500,000~1,950,000	
		09 : 00-12 : 00	260,000~338,000	390,000~507,000	500,000~650,000	
		12 : 00-18 : 00	660,000~858,000	990,000~1,287,000	1,300,000~1,690,000	
	야구장	210,000~273,000	315,000~409,500	504,000~655,200		
	올림픽주경기장	460,000~598,000	690,000~897,000	1,116,000~1,450,800		
	육상연습장(보조경기장)	140,000~182,000	210,000~273,000	336,000~436,800		
	체조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인라인하키장(1시간)	40,000~52,000				
풋살구장(2시간)	30,000~39,000					
서울 월드 컵 경기 장	주경기장	460,000~598,000	690,000~897,000	1,020,000~1,326,000		
	보조경기장(2시간)	140,000~182,000	210,000~273,000	336,000~436,800		
	풋살구장(1면, 2시간)	30,000~39,000	45,000~58,500	60,000~78,000		
	회의실(4시간)	388,000~504,400				
	연회장 (")	1,025,400~1,333,000				
	VIP룸(")	1,050,300~1,365,300				
	가변무대	749,000~973,700				
	3층데크, 광장(4시간, m ² 당)	200~260				
	회원실식당(4시간)	630,200~819,200				
	회원실 (4시간)	A1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3	1등석관람료 × 좌석수 × 0.45	87,600 ~113,800	
A2		77,800 ~101,100				
A3		63,400 ~82,400				
A4		61,800 ~80,300				
A5		45,600 ~59,200				

목동 운동 장	주경기 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야구장	1일	100,000~130,000	150,000~195,000	418,000~543,400	
		3시간	60,000~78,000	90,000~117,000		
	실내빙상장	77,000~100,100 (1시간)	115,500~150,150 (1시간)	5,500,000~7,150,000	110,000 ~143,000 (1시간)	
다목적구장	30,000~39,000(1면, 2시간)					
효창운동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장충체육관	체육관	120,000~156,000	180,000~234,000	420,000~546,000		
	보조체육관	40,000~52,000	60,000~78,000	132,000~171,600		
	다목적실	18,500~24,000	27,800~36,100	60,600~78,800		
뚝섬승마훈련원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구의야구공원	1일	70,000~91,000	105,000~136,500	200,000~260,000		
	3시간	42,000~54,600	63,000~81,900			
신월야구공원	1일	70,000~91,000	105,000~136,500	200,000~260,000		
	3시간	42,000~54,600	63,000~81,900			
창동 운동 장	축구장	1일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2시간	48,000~62,400	72,000~93,600		
	배드민턴장 (4시간, 14면)		180,000~234,000			
	실내체육관(3시간)		165,000~214,500			
비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p><u>2.</u>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p> <p><u>3.</u>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p> <p><u>4.</u> 일반행사 : <u>제1호부터 제3호</u>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p>	<p><u>3.</u> 공공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p> <p><u>4.</u>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p> <p><u>5.</u> 일반행사 : <u>제1호부터 제4호</u>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p>